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3976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이재훈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정성원

2. 주식회사 C

3. 미합중국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정성원

4. E

변론 종결2020. 9. 11.

판결 선고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147,130원 및 그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60,147,130원에 대하여는 2019. 7.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주시 F 외 9필지의 토지 5,459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B는 반려견과 관련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컨셉의 B 청담 1호점, B 상봉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는 원고로부터 택배물 집하 및 배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피고 D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9. 피고 B, C(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과 'H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광주시 I 일원에 설립되는 H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본계약을 피고 회사들에게 의뢰하고, 피고 회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계약내용(제3조)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범위>

본계약의 세부 용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브랜드컨설팅

1. 브랜드 아이덴티티 컨설팅

2. 콘텐츠 & 마케팅 컨설팅

3. 인테리어 & 건축물 컨셉 컨설팅

2. 스토어 매니지먼트 컨설팅

2-1 매장 오픈팅 컨설팅

2-2 매장 스태프 트레이닝 컨설팅

2-3 매장 운영매뉴얼 컨설팅

3. 건축 인허가 및 도면 작성 / 감리비 포함

3-1 카페, 호텔, 홀세일스토어, 물류센터 등

3-2 정원, 아웃도어 훈련장/지상층/옥상층

4. 인테리어 디자인 및 도면 작성

제3조(계약내용 및 의무사항)

1. 본 계약에 의한 원고, 피고 회사들은 "H" 스토어 오픈플래닝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며 업무범위를 모두 수행한 이후 결과물을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이다.
2. 피고 회사들은 전1항의 결과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여 원고의 확인 완료 통지를 받아야 하며, 원고의 수정 요구시 결과물을 수정 납품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의 건설사는 주식회사 J에서 수행하고 PF지급보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4. 피고 회사들은 반려건 독 스포츠공간, 호텔 및 카페의 성공적인 운영을 수행기로 한다.
5. 피고 회사들은 모든 유통사업의 물류파트너사로 원고와 우선 협상한다.
7. [H] 매장운영 수익금의 배분은 원고 8 : 피고 회사들 2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
8. 전 7항의 수익금의 범위는 본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직/간접적인 수익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산출을 의미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작업의 계약기간은 2018. 9. 19. 착수하여 2018. 12. 31. 용역을 완료한다.

제5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1.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본 계약상의 용역대금으로 544,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지불방법

계약금: 계약일에 380,8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및 잔금: 세부사항의 진행에 따라 각 용역이 완료되는 기성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163,2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계약금조로 2018. 9. 21. 150,000,000원, 2018. 10. 5. 100,000,000원, 2018. 11. 12.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8. 11. 22.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애완동물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2018. 11. 30.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를 원고에서 K로, 대금의 지급 및 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와 피고 회사들은 광주시 I 일원에 설립되는 H 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5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1. K는 피고 회사들에게 본 계약상의 용역대금으로 544,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지불방법

계약금: 계약일에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콘텐츠 및 멤버십 기획 완료시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시공도면 완료시 94,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13조(수정사항)

1. K를 신규사업자로 변경하기 전: 원고 G, 변경 후: K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원고는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위 문서의 나머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간인이 없어 위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K의 대표이사인 G이 위 문서의 K 당사자란의 대표이사 G 기재 다음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가 위 용역계약상 계약금만 지급하면 나머지 중도금, 잔금 등 펫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회사들이 책임지고 PF대출을 받아 펫사업 건축물 허가 및 신축, 오픈, 운영, 관리 등 제반업무를 완료하고, ② 2019. 1.부터 매월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겠으며, ③ PF대출금은 피고 B의 통합멤버십 회원권을 분양하여 변제하고, ④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의 3호 L점(이하 '이 사건 L점'이라 한다)으로 개발하여 1호 청담점, 2호 상봉점과 연계하여 통합멤버십 회원제로 운영하며, 전국 펫스테이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고, ⑤ 펫사업 관련 물류사업 부분을 원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을 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및 구두 약정상 2019. 2. 28.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펫사업 건축물에 대한 신축 인허가를 받을 의무 및 신축공사 완료 의무, PF대출업무의 수행 의무, 피고 B의 통합멤버십 회원권 분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B는 2호 상봉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2019. 5. 30.까지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들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9. 6. 3.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K 설립 비용,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방음벽 철거 및 설치비용 등 합계 60,147,1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들의 주장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당사자 지위는 원고에서 K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1, 2차

용역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1차, 2차 용역계약 이외에 당사자들 사이의 별도의 구두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K에게 이 사건 L점의 오픈플래닝 및 운영컨설팅을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와 같은 컨설팅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장 인테리어를 완성할 의무,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L점을 운영할 의무, PF대출을 받을 의무는 없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부당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까지 브랜드 컨설팅, 스토어 매니지먼트 컨설팅, 건축 인허가 절차 지원, 건축도면 및 인테리어 도면 작성,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상 모든 용역 업무의 수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서 피고 회사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원고에서 K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또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체결 이후 애완동물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K가 설립되었고, K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당사자 등을 변경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K가 피고 회사들에게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1차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또한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원고에서 K로 변경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 D이 새로운 법인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면 PF대출이 바로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당사자를 변경하게 된 것이므로 당사자 변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아 위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이외에 별도의 구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상의 의무인 브랜드 컨설팅, 스토어 매니지먼트 컨설팅, 건축 인허가 및 도면 작성, 인테리어 디자인 및 도면 작성 등의 용역 업무를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들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 E는 원고의 대표이사 G이 이 사건 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① 펫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고 PF대출을 받아 펫사업 건축물의 허가 및 신축, 오픈·운영·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완료하고, ② 2019. 1.부터 매월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며, ③ PF대출금은 피고 B의 통합멤버십회원권을 분양하여 변제하고, ④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 3호 L점으로 개발하여 통합 멤버십회원제로 운영하고 전국펫스테이션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⑤ 원고에게 펫사업 관련 물류사업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1,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들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K 설립비용 등으로 60,147,13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 E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이로써 원고가 속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명산

판사윤지상

판사권순현